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2021학년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020학년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공인회계사 손기근

(별지 제2호 서식)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1. 학교법인	①학교법인명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②이사장 성명	김 태 오
	③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내유동)		
	④전화번호	031) 960-1003	⑤FAX	031) 964-8012
	⑥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2.설치·경영 대학교	⑦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⑧총장 성명	유 병 화
	⑨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길 230(내유동)		
	⑩전화번호	031) 960-1031	⑤FAX	031) 963-8012
	⑫입학정원	200명	⑬기타 동 법인 설치·경영 학교명	티엘비유글로벌학교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구 분	외부 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⑭감사의견 ⑮한정사항 ⑯특기사항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8일 및 2021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금수지와 재무성과, 2022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18.06.29),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층

공인회계사 손 기 근 (인)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장 김 태 오 귀하

첨부서류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내지 제3의4호 서식)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2014-55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등(별지 제4호 내지 제4의5호 서식)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8. . .>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
이사회 귀중 2022년 05월 31일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본 감사인은 별첨된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법인일반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비회계의 2022년 2월 28일 및 2021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22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합산재무상태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 감사인의 책임은 본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본 감사인이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감사의견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의 일반업무회계와 법인이 설립한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비회계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8일 및 2021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자금수지와 재무성과, 2022년 2월 28일과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5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5에 의하면 2022년 02월 28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차액 및 누적 운영차액이 각각 (-)777백만원, (-)25,021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운영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가 4,327백만원(전기 : 4,200백만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15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13층

공인회계사 손 기 근 (인)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8. .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21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있음	있음	있음	없음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처리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 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없음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미예치 (1,000,000천원)	예산 성립 전 집행 (539,584천원)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8. .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21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학원	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있음	사립학교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7,817,099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처리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 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없음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없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7. 기타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있음	-	1,539,584
	(3) 건		

· 외부 감사인의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 법인일반회계
2. 교비회계
3. 수익사업회계
4. 기타 중요사항

※ 기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결과 보고사항 집계표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2021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확인항목	위 반 금 액 (단위 : 천원)				
	법인회계		학교회계		합계
	일반업무	수익사업	교비	부속병원	
합 계					
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여부(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별지 제4의1호 서식]	5,431,702	2,384,347	1,050	없음	7,817,099
②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4조) [별지 제4의1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③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9조의3)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학교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교비회계 전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⑧ 자금의 횡령·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직접 전출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⑩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⑪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⑫ 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33조) [별지 제4의4호 서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⑬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별지 제4의5호 서식]	없음	1,000,000	539,584	없음	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회계연도	2021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감사항목	위 반 내 용	위반금액 (천원)
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감사사항 여부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과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의 운영적자를 사유로 필요시 설립자(현 유병화 총장)등에게 자금을 수령하여 정리한 장기차입금이 존재함 법인 일반회계 : 5,431,702천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 2,384,347천원 교비 비등록금회계 : 1,050천원	7,817,099
(1) 건	**계**	
②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4조)	없음	
(-) 건	**계**	

(별지 제4-2호 서식)

회계연도	2021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감사항목	위 반 내 용	위반금액 (천원)
③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21조)	해당없음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9조의3)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전액부담시 산출기준액 (단위:천원)

구 분	사학연금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퇴직수당	계
설치학교1	35,836	2,537		38,373
설치학교2	17,117	970		18,087
합 계(A)	52,953	3,507		56,460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실제부담액 (단위:천원)

구 분	연금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퇴직수당	계
설치학교1				
설치학교2				
합 계(B)	0	0		0
(A-B)	52,953	3,507		56,460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학교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 교비회계 자금 예치로 발생한 이자 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없음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 전출 : 기준 미이행 <법정기준(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 확보 여부> : 미확보 <법정 수익률(3.5%) 충족 여부> : 미충족 <법정 부담률(80%) 준수 여부> : 미준수 ·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의 유용·횡령 여부 : 해당없음 ·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관리 여부 : 여 ·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절차 및 임대료 관리 적정 여부: 적정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료 산정 등> · 수익사업회계의 타 회계와 구분 여부 : 구분함	

(별지 제4-3호 서식)

회계연도	2021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감사항목	위반내용	위반금액 (천원)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 학교법인의 직원 인건비·일반 경상운영비(시설비, 자산취득비 포함)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내용 - 없음 -	-
⑧ 공금의 횡령·유용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 법인일반업무회계 · 법인수익사업회계 ·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다른회계로 "부당"전출 또는 대여금 포함) - 없음 -	-
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여부 (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인건비를 법인으로 전출여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 방법)	·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명세서(회계연도 기간중 발생분 전부해당, 즉 되돌려 놓은 경우 <회수분>도 포함) : 해당 없음 ·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대여한 명세서(회계연도 기간중 발생분 전부해당, 즉 되돌려 놓은 경우 <회수분>도 포함) : 해당없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포함 : 해당없음 · 임상교원에 대한 부속병원의 인건비 부담금을 대학으로 전출하면서 교비회계로 직접 전출하지 않고 법인의 일반회계를 경유하여 전출한 내용 :해당없음	-
⑩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 법인일반업무회계 : 없음 · 교비회계 : 없음	-
⑪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 법인일반업무회계 : 해당 없음 · 교비회계 : 해당 없음	-

(별지 제4-4호 서식)

회계연도	⑫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명세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 제7조 및 제33조)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2021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 대학원대학교	
구 분	중개 회사명	구입기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매입 회수	총매입액 (천원)	부도/대손처리액		비 고
					매수	금액(천원)	
법인일반 업무회계 수익사업 회계		. . .부터 . . .까지 없음					
		계					
교비 회계 부속병원 회계		. . .부터 . . .까지 없음					
		계					
합계							

·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

※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별지 제4-5호 서식)

회계연도	⑬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학교법인명	국제법률경영학원
2021		대학교명	국제법률경영 대학원대학교

요청한 세부사항	감사인의 보고 내용	위반금액 (천원)	비 고
1.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미예치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24 외 2필지 건물을 ㈜더원파트너스에게 임대(기간 : 2019.1.21.~2021.1.20.)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로 사용함.	1,000,000	
2. 예산 성립 전 집행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교비회계의 선수금은 외국인 대학원생으로부터 미리 받은 accommodation fee 등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539,584	
(2) 건	계		

· 상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 :

※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